

# 「평창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이은미 의원
- 제안일자 : 2024. 5. 13.
-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### 2. 제안이유

- 농업·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,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(안 제4조)
-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(안 제5조)

## 4. 검토의견

### 가. 관련 근거

- 「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‘지자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,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’ 고 규정하고 있음.

### 나. 입법의 취지

-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·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
### 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3조(책무)에서 군수의 책무로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기술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함.
- 안 제5조(지원)에서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농업인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

### < 치유농업 지원사업 >

1. 치유농업자원, 치유농업시설,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
2.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 사업
3.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
4.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## 5. 종합검토의견

- 치유농업의 육성으로 새로운 농업성장 동력 발굴 및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입법 취지가 적정하고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